

2023년도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6.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7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94건(안건번호 제2023-218145호~2207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18145호~218159호(순번 1번~15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8160호~218161호(순번 16번~17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8162호~218165호(순번 18번~21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8166호~218175호(순번 22번~31번)는 카페와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번호 제2023-218167호~218175호(순번 23번~3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8166호(순번 22번)는 현재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218176호~220738호(순번 32번~2594번)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4,16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7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게시자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

별 처리 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7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2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검토 보고서 상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대학교재 또는 문제집의 PDF 파일이 중고거래 사이트 '오피오피오피'에서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안 총 17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15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5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번~1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4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인 ‘☆☆☆☆’, ‘●●●’ 등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인 ‘♠♠♠♠♠♠.♠♠♠’의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제공하고 있음.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는 모두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6번~17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 내지 17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번~2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 ■ ■ ■ ■ ■ ■ ■',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 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 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8번~21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8번~21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2번~3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16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 ★★★★★ ★★' 등 모두 애니메이션 또는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그 중 순번 22번은 현재 게시물의 전송이 중단된 상태이고, 순번 25번~31번은 심의 대상 게시물이 비공개 상태임.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 제한 공개 형태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것이 예상됨. 즉,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체공개 상태의 게시물과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모두 시정 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22번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2번~31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두 시정권고로 가결하되 순번 22번의 경우 경고만 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31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이미 전송이 중단된 순번 22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259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162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웹소설,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한 남자'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4번은 영화 '한 남자'로, 2023. 8. 30. 극장 개봉한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더 버닝 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47번은 영화 '더 버닝 씨'임. 2023. 8. 23. 극장 개봉하여 현재 OTT에서 유료로 판매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제공중임.
 (영화 '더 년 2'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더 년 2'임. 2023. 9. 27.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중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32번부터 2594번까지 총 4,162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드라마, 만화, 웹소설, SW,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웹소설,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259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18145호~220738호(순번 1번~2594번)는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안전번호 제2023-218166호(순번22번)를 포함하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13.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홍승기